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7

제출년월일 : 2000. 4. 2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 3.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20세이상 주민 4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3. 參考事項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의4 - 발췌서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도 준칙(감사16800-103, 2000. 2. 2) - 별첨
-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 2000. 2. 18 ~ 3. 8) - 별첨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4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감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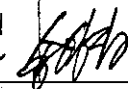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본조신설 99.8.31]

문서번호	기획16800-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0. 2. .
공개여부	

결	실무자	담당	실장	부군수	군수
재	박영호			전경	
협	기획담당 				
조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계획

기 획 실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 3.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 내용

-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제2조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법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본조에서는

제1안 : 400명

○ 장 점

- 법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게 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고 실질적인 조례운영과 군민의 권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 단 점

- 주민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음으로써 잦은 청구와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우려

제2안 : 711명

○ 장 점

-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의 최대인원으로 전반적인 주민 여론 판단 용이

○ 단 점

- '99년말 현재 평창군의 20세이상의 50분의 1은 711명으로
- 법에서 위임된 최대한 인원 711명이상이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 타군의 감사 청구 예상 주민수

- 철원, 화천, 양구 :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 위 3개군을 제외한 군 : 평균 400명

□ 추진계획

- 입법예고 : 2. 18~3.8(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3. 17일 한
- 의회심의 : 3월말한
- 공포시행 : 4월초



☎ 210-01-7101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 (0361)249-2041, FAX (0361)249-4012
 감사관 박종혁, 감사기획담당 이항규, 담당자 박재복

문서번호 감사 16800-1c3

시행일자 2000. 2. 2.(3년)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기획감사실장, 감사담당관

신상	근속	682810	지시		
접수	일자	2000. 2. 07	결재·공람	부근주	형준
	시간			김강	영근
처리과	기억실		김강		
담당자	권영수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사항 통보

1.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부칙 제1조('99.8.31) 및 행자부 감사 16800-60(200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참고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조속히 준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내용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감사관 박종혁



수신처 : 더(1-18)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설정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되 제도도입 취지,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 기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유사제도의 청구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시기 바람

“예” 법제정 이전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사제도의 감사청구인 수

- 서울특별시 : 300명, 부산광역시 : 500명
- 인천광역시 : 500명, 울산광역시 : 50명

□ 감사청구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

<시행령 제10조의 17>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기능(심의·의결)

- 주민이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 주민이 감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 주민이 감사청구에 있어서 청구요건의 심사

○ 참고사항

- 심의회 위원수, 위원의 자격, 위원장,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되,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인 위원(여성포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기 바람
- 심의회 의 소집, 개의, 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되 일반회의 절차를 준용하시기 바람

※ 주민감사청구 관련 서식 : 행정자치부령 제87호(2000.1.10 관보 참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기초·광역단체 공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기초단체]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명이상 이어야 한다.

[광역단체]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명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광역단체]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 ①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1.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363
KMM

2000.2.17
2450
2450

업 무 연 락

수신 : 시·군 감사담당

2000.2.17

발신 : 도 감사관실 박재복(☎행 2041)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수 참고자료

시군별	검로증인 20세이상 연서 주민수	비고 (담당자)
춘천시	1,000명 이상	최도화
원주시	500~1,000 "	원승재
강릉시	500~1,000 "	박상우
동해시	1,000~1,500 "	최용봉
태백시	600 "	이상구
속초시	500 "	엄종현
삼척시	500 "	최형석
홍천군	500 "	유용득
횡성군	400 "	김석동
영월군	480 "	최우현
평창군	400 "	박용호
정선군	300 "	최춘택
철원군	500 "	권용길
화천군	372 "	신창순
양구군	350 "	정용호
인제군	400 "	박시운
고성군	550 "	김용택
양양군	400 "	최진범

○ 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정에 참고하시고, 시·군 조례(안)에는
조례명, 제1조(목적),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부칙만 제정하면 됨.

※ 강원도 입법예고사항 및 조례(안)은 2.12일자 도보를 참고바람

"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전화 (0374)330-2218 / 전송(0374)330-2594
 ★ 처리부서 : 기획실(본관 3층) 실 장 : 신대승, 감사담당 : 이상진 담당자 : 박용호

문서번호 기획 16800 - 23


시행일자 2000. 2. 17 (년)

(공개여부 : 공개)

받 음 수신처참조

참 조

제 목 조례안 입법예고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draft
부 군 수		
실 장	전 결	
기 안 자	박용호	협 조
심 사 자	이상진	심 사 일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군보에 게재 하고, 읍면계시판에 게재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평 창 군 수

수신처 : 노, 로, 도.

입 법 예 고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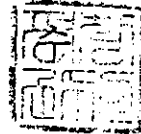
평창군공고 제2000-33호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2월 18일

평 창 군



1. 조례명 :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2. 제정취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 3.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400명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0년 2월 8일 까지 평창군수(참조 : 기획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 0374-330-2218)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232-800/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전화(0374)330-2211/FAX 594
 ☆ 처리부서 : 기획실(본청 3층) 정책기획담당 : 전완택, 실무자 : 김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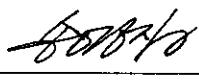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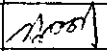
문서번호 기획 11280 -28/

시행일자 2000. 3. 28 .

공개여부 (공개)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취급		군	수
보존			
부군수	전 결		
실 장		담당 	
기안자			
심사자		심사일	협 조

제 목 제4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제4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심의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0. 3. 30(목) 09:00 ~
2. 장 소 : 평창군청 소회의실
3. 안 건 :
 - 제2000의 13호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조치사항 : 첨부물에 대한 사전검토

붙 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1부.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 : 노, 로(1,2)